1960년대 정부 지원 정책 부재로 인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정체(停滯)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tagnation of Korean School Libraries in 1960s Due to the Absence of Government Support Policy

이 재 원 (Jae-Won Lee)*

초 록

본 연구는 1960년대 정부의 지원 정책 부재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1960년대에 학교도서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도서관법〉 제정이 동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후 학교도서관이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그간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학교도서관 역사를 되돌아보고, 어느 때보다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absence of a government support policy on the development of school libraries. Speciall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ise and fall of school library in 1960's over the making first Library Law. It is meaningful that our school libraries, which have been alienated due to the lack of government polices, are not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past, as they are in need of state support.

키워드: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정책, 도서관 정책, 정책
School Library, School Library Policy, Library Law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장(jw2@snu.ac.kr)
논문접수일자 : 2019년 5월 13일 논문심사일자 : 2019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자 : 2019년 6월 18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2): 51-67, 2019.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9.30.2.051〕

www.kci.go.kr

1. 머리말

우리나라 도서관은 현행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관종을 구분하고 있다. 〈도서관법〉에서 관종별 도서관을 나열한 순서는 관종별 도서관의 사회적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사에서 정부의 각종 제도 지원이나 전문사서의 배치 등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학교도서관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 우리가 학교도서관에 주목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립한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명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 발표되고, 2007년 12월에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하여 제1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역사는 "1950년대 초 임시수도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 일대에서 시작되었는데", 특히 "1952년 3월 진주여자중·고등학교에서 최초로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고 반개가식 봉사방식이 도입되었다"고 알려져 있다(두산백과). 그러나 우리나라 근대 도서관의 맹아는 원산학사(元山學舍)와 같이 개화기에 설립된 각종 학교의 문고(文庫)일 것이다(이춘희 1995).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정부의 억압으로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경성제국대학 한 개에 불과하였고, 보성전문학교나 연희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와 같은 이전 교육제도의 전문학교인 구제전문학교(舊制專門學校) 도서관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당시 우리나라 도서관의 전부였다.

해방 후 20년이 지난 1965년 당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48개로 일제강점기인 1935년의 61개(북한지역 포함)에서 크게 나아진 바가 없었다(동아일보 1965. 4. 13). 이에 반해 학교도서관은 1960년대 이후 도서관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학교도서관 설립 당시부터 오늘날까지도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전문사서와 같은 안정적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른바 '○○도서관 ○○년사'라는 제목으로 고유의 역사 편찬이 가능한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과 달리 학교도서관 각각의 역사는 여전히 정리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역사에 관한 가장 선구적인 연구는 김효정의 석사학위 논문인 「한국 학교도서관 발전에 관한 소고」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1962년까지의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사를 학교도서관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이어서 김종성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 연구」에서 한국 도서관사를 학교도서관 운동의 형성과 전개, 그리고 쇠퇴라는 관점에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학교도서관 운동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김종성은 당시 학교도서관 운동에 참여한 이들을 인터뷰하여 부족한 사료를 보완하였다(김종성 2000).

기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역사에서 박경원(朴敬源)과 같은 선각자의 노력과 학교도서관 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신념과 헌신이 강조되었고, 특히 김종성은 1950-60년대 자발적인 학교도서관 운동이 제도화의 결실을 맺지 못하면서 정부의 교육 정책과의 괴리로 1970년대에 쇠락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

www.kci.go.kr

구들이 학교도서관 운동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흐름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오히려 정부의 지원 정책의 부재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간 소외되어 온 학교도서관 역사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 재구성 하고, 어느 때보다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학교도서관 진흥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1950년대의 학교도서관

2.1 한국전쟁 이후 학교도서관 설립 운동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해방과 함께 일제가 남기고 간 시설을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도서관을 운영하였다. 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1949년 당시 북한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도서관 수는 45개소인데, 이중 민중(民衆)도서관은 21개소(약 547,000권 소장), 학교도서관은 16개소(약 690,000권 소장), 특수도서관은 8개소(약 423,000권 소장)였다고 한다(동아일보 1949. 6. 20). 조선총독부 도서관을 모태로 설립한 국립도서관은 1945년 10월 설립 당시 장서수가 284,457책이었으며(국립중앙도서관 2016), 이로 미루어 민중도서관 장서 수에는 국립도서관을 포함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민중도서관은 오늘날 공공도서관에 해당하나, 국립도서관을 포함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또한 장서 수가 70만 권에 달한다는 점에서 경성대학(京城大學, 일제강점기의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한 대학도서관이 통계에 포함되었다. 당시 도서관을 민중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였는데, 이후 학교도서관이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도서관과 초・중・고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도서관으로 분리되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오늘날의 도서관 관종별 구분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당시 문교부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확충하고, 도립도서관(도청소재지), 군립도서관(군청소재지), 순회문고(읍, 면) 등을 설치하며, 이들 도서관 운영에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미 1947년 4월에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국립도서관학교를 개교하였고, 도서관협회를 조직하는 등의 도서관 확충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소개하였다(동아일보 1949. 6. 20). 이는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최초의 도서관 계획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당시 계획에서 학교도서관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학교도서관이라는 용어가 대학도서관과 혼재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오늘날의 초・중・고등교육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에 해당하는 도서관 지원 계획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또한 이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관심 또한 지속되기 힘들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나마 있던 학교도서관 시설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 오늘날 기록으로 남아있는 해방이후 최초의 학교도서관이 1952년 3월 진주여자고등학교에서 개관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1957년 화재로 5,000여권의 장서와 더불어 소실되었다고 한다(김효정 1963).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가시화된 것은 1952년 5월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 United

www.kci.go.kr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의 약칭)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원조에 관한 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하면서 부터이다. 이 각서에 따르면 교육 부문에는 교과서 인쇄용지와 교육용 시험실 설비 제공은 물론 도서관 복구와 교육용 병원 재건 등이 계획에 포함되었다(동아일보 1952. 6. 10). 실제로 1952년 10월 백두진(白斗鎭) 재무장관이 발표한 UNKRA의 한국 경제원조 계획에는 당장 지출할 예산 13,523,840 달러 가운데, 학교도서관 시설비 2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동아일보 1952. 10. 9). 이는 해방 이후 미국으로부터 학교교육에 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육 사조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계기라 할 수 있다.

1954년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독서주간을 운영하였는데, 독서주간을 맞이하여 도서관 관련 통계가 발표되곤 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후에도 학교도서관 수는 여전히 16개로 동일하였다(동아일보 1954. 11. 21). 장서수는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989,651권으로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학교도서관의 주류는 대학도서관으로, 초·중·고등교육을 전담할 학교도서관은 아직까지는 통계상으로 잡히지 않을 정도로 보잘 것 없는 수준이었다.

1955년 한국도서관협회가 발족하면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공동으로 독서주간을 주최하였는데, 이때부터 학교도서관이 아닌 대학도서관이란 명칭으로 통계를 발표하였다(경향신문 1955. 11. 20). 이는 도서관계에서 제도적으로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구분해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제 대학도서관 수는 전년도의 16개에 비하여 43개까지 늘어났으므로, 대학마다 도서관은 거의 모두 설치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후 중·고등학교에 도서실 설치 운동은 이후 한국도서관협회의 주된 활동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경향신문 1955. 11. 20).

중·고등학교에 도서관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4년부터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대부분의 학교가 도서실 등을 설치하여 구색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장서 수나 시설 등은 형편없었다. 그러나 1954년 10월에는 마산여자고등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설립되었고, 1957년 5월에는 부산에 최초의 개가제 도서관인 경남고등학교 도서관이 개관하였다(김효정 1963). 한국전쟁 동안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건립 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도서관 설치비용을 학생에게 전가하여 학생들이 '잡부금 징수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경향신문 1955. 6. 10).

이러한 학교도서관 건립 운동에 부응하여, 문교부는 1954년 마산여자고등학교를 학교도서관을 위한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학교도서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하도록 하였다(김종성 1998). 이 무렵에는 도서관을 갖춘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경향신문 1957. 10. 22). 이는 이 당시 학교교육에 도서관이 최소한의 필수 시설이라는 인식에 어느 정도는 학교도서관 운동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심장이라는 표현에 빗대어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심장"이라는 표현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었다(김경일 1958; 경향신문 1958. 10. 26., 4면 등).

www.kci.go.kr

2.2 학교도서관의 확산과 학교도서관법 제정의 필요성

그러나 도서관 운영이 학교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르다 보니, 학교에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기준을 제시하는 〈학교도서관법〉 제정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었다. 이 당시 현장에서 작성한 결과물이 1958년 10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작성한 입법 자료인 「도서관법사안(私案)」이다. 물론 「도서관법사안」은 아직 우리나라에 〈도서관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처럼 〈학교도서관법〉의 독자 입법을 제안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은 학교도서관을 "학교교육에 없어서는 아니 될 기초적인 설비"로 정의하고 보호·육성하고자 하였는데(한수생 1963), 이후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에 미국의 교육사조 못지않게 큰 영향을 미쳤다.

「도서관법사안」은 당시 상황을 "대학설치규준(規準)에 대학도서관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뿐 학교도서관에 대한 하등의 입법 조치가 없으므로 학술연구의 진전과 학교교육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민학교 이상의 학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학교도서관법〉을 제정할 것을 진정하였다(경향신문 1958. 10. 26).

같은 해 문교부는 〈중·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을 제정하는데 도서관 의무 설치 규정을 포함하기로 하고(경향신문. 1958. 10. 21), 1959년 4월에 공포하였다. 4월 공포된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시설기준령〉(문교부령 제82호, 이하 시설기준령)은 우리나라에서 학교도서관 설치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각 학교에는 3학급까지는 300권 이상의 도서를 비치하여야 하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3학급 마다 200권 이상씩을 가산하여 비치하여야"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공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문교부장관의 정하는 바 연도별 확충계획에 따라 본 기준에 도달하도록"하였다(최근만 1962). 그러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학교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란 불가능하였고, 이런저런 책을 끌어 모아 장서 수만 얼추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설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시설기준령〉에는 도서관 시설이나 직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보니 학교도서관의 충실한 운영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김두홍 1961).

한편, 당시 "경기중·고등학교에 건평(建坪) 164평의 건물을 현대식 '모델' 도서관으로 개조하여" 개관하였는데, 당시 "대부분의 학교에는 도서실조차 없는 형편"이었다(동아일보 1958. 10. 21). 이에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법사안」에서 도서관의 "건물은 교실 1개 이상의 면적이면 간이도서관이 가능할 것이며, 예산은 국민학교는 아동 1인에 연간 3백 환(圜) 정도, 중·고등학교는 생도 1인에 최저 5백 환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며 국고 보조를 희망하였다(경향신문 1958. 10. 26). 미국에서 학교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한 연방 법률이 1958년에 처음 통과되었음을 고려하면(곽철완, 최재완 2008), 「도서관법사안」은 학교도서관의 국고 보조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제법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1958년 11월 24일 민장식(閔壯植) 의원 외 22인이 30회 국회에서 제안한 〈도서관법안〉은

www.kci.go.kr

도서관을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 학교도서관으로 구분하고(제3조), "각급학교(교육법에 의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초급대학, 대학 등)에는 도서관을 설치하여야"(제26조) 하며, "학교도서관에 관한 기준은 문교부령으로 정하고"(제26조), "학교도서관의 전문직원은 사서교사라 칭하고, 사서교사는 해당 학교의 교사자격자로서 사서교사의 강습을 받은 자"(제28조)로 하며, "국가는 학교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제29조)고 하였다(의안번호 040099. 도서관법안). 이 법안은 1963년 제정된 〈도서관법〉에 비하여 학교도서관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한 진보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 법안은 회기불계속으로 자연 폐기되었다.

민장식 의원은 1959년 5월 21일에도 동일한 〈도서관법안〉을 32회 국회에서 다시 상정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회기불계속으로 폐기되었다(의안번호 040099. 도서관법안). 민장식 의원이 제안한 도서관법은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명시하는 등 「도서관법 사안」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한편, 민장식 의원의 〈도서관법안〉은 "학교도서관은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반 국민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고"(제30조), "학교도서관은 입관료, 기타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제31조)고 규정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의 공공성을 강조한 점도 특이할 만하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정권의 연이은 정치파동과 3·15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정치 국면의 격랑 속에서 〈도서관법안〉은 사장되고 말았다(민장식 1959).

이처럼 도서관의 법률적, 제도적 지원은 지지부진하였지만,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학교도서관 수는 1959년에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959년 문교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도서관 수는 171개이며, 이 중 초등학교가 7개 소, 중·고등학교가 164개 소에 달하였다(동아일보 1959. 10. 21). 초창기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건립 운동이 활발하였음을 당시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표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역 학교도서관은 같은 해 5월에는 '서울특별시 국민교 및 중고교 사범학교 도서관 협의회'를 결성하고, 11월에는 부산시 학교도서관 협의회가 결성되는 등 학교도서관 관련 단체들도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동아일보 1959. 5. 25;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 2003). 서울시 협의회는 이후 '서울특별시 학교도서관 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1960년 12월 경복고교 도서관에서 제2차 총회를 개최하였다(경향신문 1960. 12. 13). 학교도서관 협의회에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성과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우량도서를 선정하는 등의 역할도 하였다(김종성 1998).

〈표 1〉 1959년 당시 학교도서관의 지역별 분포

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도서관수(개)	44	1	11	10	11	32	38	3	16	5	171

www.kci.go.kr

학교도서관이 늘어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관한 실무 지침에 대한 수요도 따랐을 것이다. 이에 발맞춰, 1959년 12월에는 당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정리계장으로 재직하던 장일세(張一世)가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도서관 운영지침서인 『학교도서관운영법』을 간행하였고, 1960년에는 김두홍(金斗弘) 등 일선 학교의 사서교사가 집필한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제』도 발간되었다(김경일 1960).

3. 〈도서관법〉 제정과 학교도서관의 변화: 1960년대의 학교도서관

3.1 법률적, 제도적 지원 미비로 인한 학교도서관의 정체

1950년대 말부터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한국도서관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60년 7월말에는 학교도서관 수가 292개 소까지 늘어났고, 장서 수도 508,887권에 달하였다(경향신문 1960. 8. 4). 그러나 학교도서관 수는 비록 늘어났지만, 도서관이라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 장서 구입 등의 내용은 몹시 부실하였다.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도서관 중 초등학교에 설치한 학교도서관은 전무하였고, 학교도서관 292개 가운데 장서 수가 500권이 넘는 도서관은 172개에 불과하였다(윤여택 1960).

따라서 당시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쟁점은 ① 초등학교까지 학교도서관 확대, ② 정부 예산으로 도서관 운영비 지원, 그리고 ③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배치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학교도서관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함은 이미 문교부에서 규정으로 공포하였던 것으로, 1960년 5월 〈초등학교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문교부훈령 제67호)에서 "학교에는 학생 및 교육에 유용한 것으로서 6학급까지는 5백 권 이상의 도서를 비치하여야 하고, 6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6학급마다 3백 권 이상 식(式) 가산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비치도서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는 따로히 정하는 바에 의(依)한다"(제6조)고 하였다(김경일 1965). 이어서 문교부는 1961년 「국민학교운영계획요강」을 발표하면서, "모든 국민교에는 그 규모의 대소와 고정적 시설의 유무를 막론하고 학급문고와 학교도서실을 설치하여야"하며, "학급문고 또는 도서실의 설비가 없는 학교에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관리방법을 각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창안하여 실시토록"하였다(동아일보 1961. 10. 5). 그 결과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교에서는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 혹은 '교실 겸용 도서실'도 나타났다.

> (경남의령중학교는) 방과 후 깨끗이 소제하고 난 말쑥한 교실들이 우리 도서관의 열람실이다. 가정에 돌아간 뒤에는 자기 방도 열람실이 되며, 교외 우거진 숲사이 녹음도 열람실이 되는 것이다. 학생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농촌 학교도서관의 열람실인 것이다.
>
> (한국도서관협회 1965a)

서울시 교육국은 더 나아가 '국민학교도서실 기준'을 마련하여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경향신문 1963. 2. 23). 서울시 교육청은 1964년에 시내 134개 학교의 도서 실태를 조사

www.kci.go.kr

하였으나, 학교도서실을 두고 있는 학교는 98개이며, 겸용 공간이 아닌 독립된 도서실을 갖춘 학교는 33개에 불과하였다(동아일보 1964. 2. 1).

이처럼 학교도서관 설립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 운영이 열악한 것은 학교 경상비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하고, 학생들로부터 도서관비를 징수하거나, 후원회나 사친회(師親會)를 통하여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도서관의 상황도 학교의 재정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었다(동아일보 1960. 10. 21). 이에 학교 도서비에 국고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문교부는 초등학교에 학급문고 설치 등을 의무화하였으나,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학교의 잡부금 징수도 금지하면서, 학교도서관 설립은 다음과 같은 '미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경향신문 1962. 12. 22).

> 작년 독서주간에 어떻게 하면 도서실을 마련할까를 상의한 송포국민학교 어린이회(회장 추광복)에서는 우선 도서관이 있는 도시 학교에서 책을 빌려다 읽자고 결의했다. 곧 인천창영국민학교와 서울북성국민학교 어린이회장 앞으로 "책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각각 집에서 읽던 책들을 학교에 갖다 놓고 함께 읽기로 했다. 인천창영과 서울북성에서는 빌려주는 것보다 송포의 동무들에게 책을 모아주자는 운동을 벌여 12월 말에 창영에서 378권, 북성에서 54권을 각각 보내왔다. 이에 감격한 선생들은 부서진 책상쪽을 모아 책장과 도서관 열람용 책상을 만들고, 교장선생은 교장실을 비워 도서실로 쓰게 했다. 그 뒤 다시 교실 한 간을 비워 넓은 도서실을 마련하고 비록 앉은뱅이 책상에서나마 책과 친할 수 있게 되었다. 송포에서는 책을 보내준 두 학교에 싸리비와 수수비를 만들어 50자루씩 보내줬다.
>
> (경향신문 1962. 5. 26)

> 청양국민학교 어린이들은 학교도서관을 세우기 위해 오래된 쇠 부스러기며, 휴지, 빈 병들을 모으고 있답니다. "우리가 조금씩 내는 폐품은 도서관이 된다"고 외치고 다니며 어린이들은 못 쓰게 된 물건들을 모으는 운동을 펴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모인 물건을 팔아 얻은 돈은 280원밖엔 안돼요. 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부지런히 서둘러 보셔요. 훌륭한 도서관을 지을 수 있을 테니.
>
> (경향신문 1963. 6. 14)

학교도서관에 사서 전문직이 배치되지 않으면 자칫 어렵게 만들어진 도서관이 독서실이

〈표 2〉 서울시 교육국 초등학교 도서시설 기준(1963. 3. 1. 시행)

아동 수	독서실(평)	도서(권)	잡지(종)	신문(종)	책상(개)	걸상(개)
1-200	12	300	2	3	5	30
201-1,000	24	1,000	3	4	17	100
1,001-2,000	48	3,000	4	5	34	200
2,001이상	60	4,500	5	6	50	300

www.kci.go.kr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학교도서관 설립 초기부터 학생들의 독서 지도를 담당할 사서교사의 필요성 또한 명확하였다. 그러나 1957년에야 비로소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가 개설되었고, 1959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도 도서관학과가 개설되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직 도서관 전문 인력을 양성할 만한 교육시설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학교도서관이 활발하게 설립되던 초창기에 인력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이, 오늘날까지도 학교도서관에 전문사서가 배치되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법률적・제도적 지원 장치의 부재는 곧바로 학교도서관의 감소로 이어졌다. 1960년 7월 292개에 달하던 학교도서관이, 1962년 3월에는 143개로 줄어들었던 것이다(최근만 1962). 물론 학교도서관 수의 감소가 1960년 4・19 혁명과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사회의 혼란상이 반영된 일시적인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도서관의 근거가 될 〈도서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1962년 처음 열린 도서관대회는 도서관법의 조속한 제정과 공포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물론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재정적 조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도서관의 효용을 위한 과목을 새로이 배정"하며, "각 시・도마다 학교도서관 연구지정 학교"를 늘릴 것도 함께 제안하였다(동아일보 1962. 8. 1).

당시 정부는 〈도서관법〉 제정을 놓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전국의 도서관을 지도・감독하는 문교부 안과 국립중앙도서관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시립도서관은 시장이, 대학도서관은 총장이, 학교도서관은 교장이 지도감독"하며, 문교부를 최종 감독기관으로 하는 한국도서관협회 안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었다(동아일보 1962. 2. 6). 한국도서관협회 안에는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① 학교도서관의 설치를 의무화할 것, ② 학교도서관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정할 것, ③ 학교사서와 사서교사제도의 확립, ④ 학교도서관 육성지도를 위한 장학체계를 확립할 것 등도 함께 건의하였다(김경일 1965).

3.2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제정과 학교도서관

3.2.1 〈도서관법〉 제정과 학교도서관

〈도서관법〉은 1963년 9월 3일 각의(閣議)를 통과하고(동아일보 1963. 9. 12), 같은 해 10월 7일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동아일보 1963. 10. 7).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법〉은 1963년 10월 28일 법률 제142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1월 28일 시행되었다. 당시 제정된 〈도서관법〉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1963년 제정된 〈도서관법〉은 1988년 2월 28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을 시행하기 전까지 무려 25년간 원안 그대로 유지된 법안이다. 〈도서관법〉에서는 학교도서관 설치와 함께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 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1960년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확산에 크게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사서직원(교사)의 배치는 "도서관의 과학적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한수생 1963), 이전의 〈시설

www.kci.go.kr

〈표 3〉 1963년 제정 〈도서관법〉 중 학교도서관 관련 내용

제1장(총칙)	
제3조(도서관의 종류)	①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서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학생 및 교원의 학습·교양·조사·연구 및 레크리에이션 등 그 이용에 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사서직원의 배치)	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자료 및 운영에 관한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9조(감독청)	② 학교도서관은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당해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3장(학교도서관)	
제25조(설치)	①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는 도서실 또는 도서관을, 실업고등전문학교·초급대학·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에는 도서관을 두어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직원)	학교도서관의 직무를 담당할 직원으로서 실업고등전문학교·초급대학·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에는 사서직원을 두어야 하며,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는 각각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27조(일반의 이용에의 제공)	학교도서관은 그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기준령〉에 비하여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3년 〈도서관법〉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규정은 없다보니, 오히려 1958년 민장식 의원의 〈도서관법안〉에 비하여 실효성이 없는 반쪽짜리 법이라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국고는 공공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도서관의 시설과 설비에 요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19조)고 하여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었지만, 학교도서관은 정부의 예산 보조가 따르지 않다보니 여전히 '미담'이나 '폐품 수집'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30일 청주시내 중앙국민학교는 어린이들의 손으로 마련한 건평 10평의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어린이들은 도서관 건립기금을 만들고자 폐품수집운동을 펼쳐 27,760원을 모았다. 이 도서관에는 『한국아동문학전집』, 『세계아동문학전집』을 비롯하여 지리·역사·과학 등 교과의 참고서적과 교양서적 등 900권의 어린이도서가 갖추어졌다.
>
> (동아일보 1964. 7. 4)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연구회 활동을 들 수 있다. 1963년 4월 대한교육연합회 산하 연구단체로 한국학교도서관 연구회가 가입·발족하고, 제7회 연구교육발표대회부터 매년 10월 학교도서관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김경일 1968). 교사들은 연구회를 통하여 학급문고와 학교도서관 운영

www.kci.go.kr

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였다.

비록 〈도서관법〉이 제정되었으나 학교도서관의 경우 그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미비하다 보니, 아직 제정되지 않은 〈도서관법시행령〉에 대한 기대가 컸다.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법시행령〉 제정에 도서관 전문직의 참여를 요구하였다(동아일보 1964. 9. 24).

3.2.2 〈도서관법시행령〉 제정과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도서관법〉을 보완하여 학교도서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포함되기를 바랐던 〈도서관법시행령〉은 1965년 3월 26일 대통령령 제2086호로 제정·시행되었다. 〈도서관법시행령〉에 포함된 학교도서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도서관법시행령〉 제정에 앞서 문교부는 한국도서관협회로 하여금 도서관계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실제 〈도서관법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과 같이 예산 증액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모두 삭제되었다. 대표적으로 〈도서관법시행령〉 제6조의 경우 사서교사의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교사의 증원 문제와도 연계되기 때문으로, 당시 입안 담당자는 "누구나 훌륭한 시설과 충분한 자료를 갖춘 도서관에서 생활을 영위하기에 흡족한 보수를 받아가며 일하고 싶을 것"이나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며 목표이지 요구사항이 될 수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도서관계에서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육진성 1965).

1965년 제정된 〈도서관법시행령〉은 1960년대에만 두 차례 더 개정되나 학교도서관 관련 조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967년 3월 27일 일부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은 부칙에 "이 령 시행 당시 국·공립의 공공도서관 또는 국·공립의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공무원(사서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이 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전형을 거쳐 정사서 또는 준사서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추가되었을 뿐, 1969년 11월 3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에도

〈표 4〉 1965년 제정 〈도서관법시행령〉 중 학교도서관 관련 내용

제2조(도서관 시설기준)	② 법 제25조제2항의 학교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따로 각급학교의 시설기준령에 의한다.
제4조(사서직원의 자격과 기준)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중 국·공립의 공공도서관 또는 국·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자격은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며, 사립의 공공도서관 또는 사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은 그 자격에 따라 이를 정사서와 준사서로 나눈다.
제6조(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기준)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1. 국민학교에는 1인 이상의 사서교사나 1인 이상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그 학생수가 1,200인 이하인 때에는 1인의 사서교사나 1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며, 그 학생수가 1,200인을 초과할 때에는 2인의 사서교사나 2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3. 실업고등전문학교·초급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大學校의 大學을 제외한다)과 대학교에는 그 학생수가 500인 이하인 때에는 2인의 사서직원을 두며, 그 학생수가 500인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800인마다 1인의 사서직원을 증치한다.

www.kci.go.kr

학교도서관에 관한 조항은 이전과 동일하였다. 〈도서관법시행령〉의 학교도서관 관련 조항은 〈도서관법〉과 마찬가지로 1988년 8월 16일 〈도서관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 20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었다.

3.3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제정 이후의 학교도서관

〈도서관법〉에서 학교도서관 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1964년에는 학교도서관 수가 950개가 되었고, 학교도서관 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1968년에는 전국에 학교도서관이 3,322개소가 되었다. 장서수가 48,000권에 달하는 학교도서관도 두 개나 되었다(경향신문 1968. 3. 27).

학교도서관 설립 초기에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이 설립되었다면, 점차 농촌까지도 학교도서관 설립 운동이 확산되었다.

> 전남 보성군 노동국민학교(학교장 송홍섭)에서는 지역사회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노동향토학교 도서관설립 3개년 계획'을 세우고 동창회와 외지에 있는 고장출신 인사들에게까지 널리 호소하고 있다. "이 산간벽지에 책을!" 호소하는 설립위원회에서는 시청각자료까지 갖추기 위해 안간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
>
> (경향신문 1966. 5. 23)

> (경기도 양평군) 청운중학교는 몇 년 전만 해도 다 쓰러져가는 교사와 학생 2백여 명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시골 중학교. ... 박(재휘)교장이 이룩한 기적은 학생들에게 "예의바르고 근면한 학생이 되자"고 호소한 것과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을 데리고 이삭줍기 운동에 나선 것으로 비롯했다. 이삭줍기로 번 돈 1만여 원으로 학교도서관을 증축, 책을 사들여 지금은 장서가 1천6백여 권. 앰프시설까지 마련했다.
>
> (경향신문 1966. 11. 10)

그러나 1965년 〈도서관법시행령〉 제정 이후 후속 규정 정비가 지연되면서 학교도서관은 정체기에 접어들게 된다. 먼저 〈도서관법시행령〉에서 학교도서관 시설기준으로 제시한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은 1967년 10월 26일에야 비로소 대통령령 제3,253호로 공포되었다.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서는 도서실을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나의 시설을 다른 시설과 겸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5조), '연도별시설보충계획'에 따라 보완하도록 하였다. '학교연도별시설보충계획'은 1968년 10월 17일에야 문교부령 제201호로 공포되었다(김두홍 1970).

〈도서관법시행령〉의 후속 조치들은 학교의 규모에 따른 도서관 시설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학교도서관의 변칙적인 운영을 사실

〈표 5〉 1960년대 연도별 학교도서관 수의 변화

연도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학교도서관 수(개)	149	259	950	1,422	2,184	2,956	3,322	4,276

* 1962-65년은 한국도서관협회 1965b, 4; 1966년은 경향신문 1967. 2. 24., 3면; 1967-68년은 조재후 1969, 29; 1969년은 김두홍 1970, 4 참조.

www.kci.go.kr

상 허용하는 규정이었다. 학교도서관을 전용도서관과 겸용도서관으로 구분하였을 때, 1969년의 경우 전체 8,134개의 학교 가운데 전용도서관을 설치한 학교 수는 1,005개에 불과하였다(김두홍 1970).

물론, 1968년에는 각 시도에 처음으로 사서교사 33명이 배정되는 등 〈도서관법〉과 〈도서관법시행령〉 제정의 효과가 학교도서관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조재후 1969). 그러나 1969년에는 다시 사서교사가 추가 배정되지 않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학교도서관 지원 의지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박치욱 1969).

무엇보다도 〈도서관법〉과 〈도서관법시행령〉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는 마련하지 않은 채 학교도서관 설립과 운영의 의무만 규정하다보니, 결국 그 부담은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6월 사친회비 등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엄단하기 위하여 학교에 승인받은 공납금을 제외한 일체의 잡부금 징수를 모두 금지하였다(경향신문 1961. 6. 14). 그러나 정부 예산 지원이 따르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설치와 운영을 이유로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납부를 명목으로 잡부금도 점차 되살아났다.

> 저는 광주 모 실업학교 학부형인데 자녀의 말을 들어보건대 도서비로 연 6백 원을 갹출한다고 한다. 전번엔 반개가식이었는데 책을 분실한다 해서 그 후 폐가식으로 했었고 그래도 부족한지 이번엔 철망까지 쳐 버렸다고 한다. 학생을 도둑으로 취급하는지 매우 불쾌하다. 도서대출도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차라리 연 6백 원 내는 돈으로 자녀들이 책을 사서 본다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이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이런 학교도서관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부형들의 부담을 많게 한다. 누굴 위해 도서관이 있는지.
>
> (경향신문 1967. 4. 26)

더 나아가 등록금을 결정하는 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기성회비'라는 명목으로 잡부금 징수를 허락하기도 하였는데, 이 때 학교도서관 신축을 잡부금 징수의 구실로 삼기도 하였다. 1967년에는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경기여자고등학교의 도서관 신축을 위한 특별회비 4천만 원 징수를 허가하였다가, 문교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67. 9. 21).

이처럼 학교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비용 부담이 전가되면서 '학교도서관 폐지론'도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폐지론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를 부정하기 보다는 학교도서관을 학급문고로 대체하자는 주장으로,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의 대안으로 학급문고가 활발하게 설치되었다. 1969년에는 경상남도의 경우 국민학교에 학급문고 6,004개가 설치되면서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92%에서 40%로 급감하였고, 중학교도 학급문고 1,259개가 신설되면서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90%에서 84%로 감소하였다(박치욱 1969).

학교도서관은 1960년대에 학교도서관 설치 의무가 법제화되고, 1960년대 말에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50% 이상의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는 등 중흥기를 맞이하였다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시 정부의 '반교육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퇴락하게 된다(김종성 1999).

www.kci.go.kr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도서관 건립을 둘러싸고 정부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학생이 오히려 정책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학교도서관이 가장 왕성하게 추진되던 1960년대에 이미 학교도서관 쇠락의 단초가 내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4. 맺음말

"학교도서관을 가지지 않고 현대교육을 한다는 것은, 수영장을 가지지 않고 수영을 가르치려는 것과 다름없다"(김경일 1961)는 1960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에 참여하였던 한 교사의 인용문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한국전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필수요소로 받아들여져 왔다. 실재로 정부는 1959년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시설기준령〉에서 학교도서관의 의무 설치를 규정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1950년대 말부터 확산된 아래에서부터의 학교도서관 설립 운동은 1960년대에는 학교도서관 수가 4,000여개에 달할 정도로 양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등을 거치면서 〈도서관법〉 제정은 지연되었고, 1963년에 비로소 〈도서관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 지원 근거는 생략된 학교도서관 설치 의무 규정만 남아있는 반쪽자리 법에 불과하였다. 일선 학교는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학교도서관 의무 설치를 충족하기 위하여 '폐품수집'이나 '이삭줍기' 등을 통하여 운영비용을 조달하였고, 도서관 설립을 빌미로 잡부금 징수도 되살아났다. 독자적인 〈학교도서관법〉 제정은 물론 실효성 있는 〈도서관법〉이나 〈도서관법시행령〉의 제정도 지연되면서, 학교도서관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교교육에서도 소외된 채 쇠락하게 되었다.

참 고 문 헌

곽철완, 최재완. 2008. 미국 학교도서관 발전에 있어서 연방 법률과 학교도서관 기준.『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109-124.

국립중앙도서관. 2016.『국립중앙도서관 70년사: 1945-2015』.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김경일. 1958. 학교도서관의 설비와 운영.『도협월보』, 7(8): 27-32.

김경일. 1960. 1960년의 학교도서관.『도협월보』, 1(9): 10-12.

김경일. 1965.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국회도서관보』, 2(7): 9-14.

김경일. 1968. 제11회 전국교육연구대회 학교도서관분과 연구발표회 참관기.『도서관문화』, 9(1): 21-25.

김두홍. 1961. 학교도서관의 삼요소.『도협월보』, 2(2): 71-73.

김두홍. 1964. 1964년의 학교도서관.『도협월보』, 5(10): 9-12.

www.kci.go.kr

김두홍. 1970. 학교도서관행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도서관문화』, 11(2): 2-8.
김종성. 1998. 1960년대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개에 관한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3): 45-80.
김종성. 1999.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 쇠퇴의 심층구조와 교육 왜곡.『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4): 299-326.
김종성. 2000.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김효정. 1963.『한국 학교도서관 발전에 관한 소고』.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민장식. 1959. 도서관법을 제안하고서.『새교육』, 11(2): 57-59.
박치욱. 1969. 1969년도의 학교도서관계-창조적인 교육기반 조성의 입장에서.『도협월보』, 10(10): 12-15.
육진성. 1965. 도서관법 시행과 한국 도서관의 장래.『국회도서관보』, 2(4): 5-10.
윤여택. 1960. 도서관을 증설확장하라-국민의 지적 수준의 고도화를 위하여.『경향신문』, 1960. 8. 4., 4.
이춘희. 1995. 근대한국도서관사 연구-개화기의 근대도서관 성립과 그 성격을 중심으로.『한국문헌정보학회지』, 29: 11-44.
조재후. 1969. 1968년도의 학교도서관계.『도협월보』, 10(1): 28-32.
최근만. 1962. 1962년의 학교도서관.『도협월보』, 3(8): 10-14.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 2003.『부산의 도서관사』. 부산: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
한국도서관협회. 1965a.『학교도서관의 시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1965b.『한국의 도서관: 1965년 3월 31일 현재 전국도서관실태조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한수생. 1963. 도서관법 해설.『법제월보』, 5(11): 185-200.

[웹 사이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online]. [cited 2019.5.15].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경향신문. [online]. [cited 2019.5.15]. 〈http://www.khan.co.kr/〉.
동아일보. [online]. [cited 2019.5.15]. 〈http://www.donga.com/〉.
두산백과. [online]. [cited 2019.5.15]. 〈http://www.doopedia.co.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usan Regional Council of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Library History of Busan*.

www.kci.go.kr

Busan: Busan Regional Council of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Choi, Kun-man. 1962. "1962 School Library." *Korean Library Association Monthly Magazine*, 3(8): 10-14.

Han, su-saeng. 1963. "A description of the library law." *The monthly edition of the law*, 5(11): 185-200.

Jo, Jae-Hoo. 1969. "School Library Relationship in 1968." *Korean Library Association Monthly Magazine*, 10(1): 28-32.

Kim, Doo-Hong. 1961. "Three Elements of School Library." *Korean Library Association Monthly Magazine*, 2(2): 71-73.

Kim, Doo-Hong. 1964. "1964 School Library." *Korean Library Association Monthly Magazine*, 5(10): 9-12.

Kim, Doo-Hong. 1970. "A Study on the Problem of School Library Administration." *Library culture*, 11(2): 2-8.

Kim, Hyo-Jung. 196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chool Library in Korea*. M.A. thesis., Ewha University.

Kim, Jong-Sung. 1998. "A Study on the School Library Movement of the 1960'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3): 45-80.

Kim, Jong-Sung. 1999. "A Study on the Declining of School Library Movement of the 1970s and 1980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0(4): 299-326.

Kim, Jong-Sung. 2000. *(A) Study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Development Stages of the School Library Movement in Korea*. Ph. D. diss., Pusan University.

Kim, Kyung-ill. 1958. "Facilities and Operation of the School Library." *Korean Library Association Monthly Magazine*, 7(8): 27-32.

Kim, Kyung-ill. 1960. "School Library of 1960." *Korean Library Association Monthly Magazine*, 1(9): 10-12.

Kim, Kyung-ill. 1965. "Library law and school library." *National Assembly Library Monthly Magazine*, 2(7): 9-14.

Kim, Kyung-ill. 1968. "A Report on the School Library Department and Research Presentation Conference of the 11th National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Library culture*, 9(1): 21-25.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65a. *The facilities of the school library*.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www.kci.go.kr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65b. *Library of Korea: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Library in Korea as of March 31, 1965*.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Kwak, Chul-Wan and Jae-Hwang Cho. 2008. "The Federal Legislations and School Library Standards in the School Library Development of the U. 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109-124.

Lee, Chun-Hee. 1995. "A Study on the Modern Korean Library-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Modern Library and its Characteristics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 11-44.

Min, Jang-Sik. 1959. "I'm proposing the Library Act." *New education*, 11(2): 57-59.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6. *National Library of Korea's 70th Anniversary: 1945-2015*.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Park, Chi-Wook. 1969. "The School Library Relationship of 1969--In the Viewpoint of Creating a Creative Education Foundation." *Korean Library Association Monthly Magazine*, 10(10): 12-15.

Yook, Jin-Sung. 1965. "Enforcement of the Library Law and the Future of Korean Libraries." *the Library of Congress*, 2(4): 5-10.

Yun, Yeo-Taek. 1960. "Expand the library-for the advancement of the intellectual standard of the people." *Kyunghyang Shinmun*, 1960. 8. 4., 4.

www.kci.go.kr

www.kci.go.kr